감사보고서

강원도지사 및 원주의료원 이사회 귀중

본 감사는 2020년 10월 26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원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감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1. 진료성과급

원주의료원 연봉제 시행규정 제3조에 의하면,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정하여 해당 직원이 연봉계약기간동안 받는 임금을 말하고, "진료성과급"이라 함은 일반의 이상 의사 개인의 진료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르면 연봉계약시 진료과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고, 연봉상한액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도시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진료성과급에 관한 규정으로는 연봉제 시행규정 제15조에서 진료성과급은 원장이 진료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여 결정하되, 의사 인건비의 총액은 총 의업수입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원주의료원은 의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진료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진료성과급 = (의업총수입-목표액) * 지급율

(2) 지급율: 부가가치율의 10%

(3) 부가가치율= (각 의사의 의업총수익 - 사용한 재료비를 뺀 금액)/각의사의 의업총수익

2018년과 2019년도 총의사인원수 대비 진료성과급을 받은 의사의 수 및 특정의

사의 연봉대비 진료성과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의사인원수 대비 진료성과급을 받은 의사의 수>

	총 의사인원수	진료성과급을 수령한 의사수
2018년	28	14
2019년	31	15

<특정의사의 연봉대비 진료성과급비율>

	2018년	2019년
의사	연봉대비 진료성과급	연봉대비 진료성과급
A	66%	71%
B	52%	52%
C	33%	38%
D	31%	41%
E	32%	37%
F	29%	46%
의료원총성과급에서 6명이 차지하는 비율	78%	73%

상기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료성과급을 계산하는 부가가치의 개념을 의료수익에서 재료비만을 빼는 것으로 간주함으로 인해 재료비를 적게 쓰는 과에 혜택이 돌아가는 점과 재료비가 아닌 다른 필수 비용에 의해 획득되는 부가가치를 간과하는 점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상기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금액대비 진료성과급이 70%이상의 의사의 경우도 발생하며 특정 몇몇의 의사만이 진료성과급을 받고, 또 이 의사들이 총 진료성과급중 70%이상의 금액을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개별 의사에 대한 진료성과급의 한도 규정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료원에서 연봉상한액을 규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 이유는 무분별한 의사급여의 책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바, 진료성과급의 규정이 이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유용될 수 있습니다.

진료성과급의 규정은 2002년에 강원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의료원별로 진료성과급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한 진료성과급 지급계획을 보고하라는 지침을 하달하면서 만들어지 규정으로 약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원주의료원은 현실에 입각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진료성과급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관사운영

원주의료원은 감사일 현재 연립빌라 4개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2곳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연립빌라 3개호는 일반직원이, 1개호는 일반의가 사용하고 있으며 2곳의 오피스텔은 공보의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관사는 공보의에게 지급하는 것을 관행처럼 해오고 있었으나, 현재 관사가 낡아 공보의의 요청에 따라 오피스텔 2곳을 월 40만원과 월 45만원에 각각 임차하여 공보의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주의료원 숙소운영관리규정에 따르면 숙소의 사용 허가는 원장이 하고 공과금은 사용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만 되어 있을 뿐 사용자의 선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관사 1개곳은 2010년부터 공보의가 사용하던 곳으로 그 공보의가 2012년부터 봉직의로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일반의사에 대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원주의료원에서는 관사사용과 관련한 사용자의 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30일

감사 정재훈